

대법원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이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어서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의 경과

▣ 사안의 내용 및 쟁점

- 원고 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임.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였던 반면,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28일에 불과하였음.
-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일본 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다만 원고가 일본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
- 최근 국가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다른 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약하였던 2014년에 일본 구단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 이와 같이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조세조약(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임. 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약칭함)을 체결한 바 있음.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등도 포함됨)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즉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조세조약이 인정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를 짐.
-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외국인 등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에도 주거가 있는 등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최종 거주지국이 외국 거주자로 판명되어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국내원천소득만 해당됨)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한국의 과세권만 인정됨. 한편 비거주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에 세금을 납부할 때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므로, 한국의 과세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주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임)를 부담함.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4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원고의 최종거주지국

이 한국 또는 일본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으로 판명된다면 국내 거주자로 한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반면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이 일본으로 판명된다면 일본 거주자로 한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대개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있고, 한·일 조세조약도 마찬가지임.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 한국 거주자이면서 일본 거주자인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이 한국 또는 일본인지 여부임.

▣ 원심의 판단

- 제1심 : 원고 승소
 - 원고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 결과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소득(국외원천소득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일본 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 심 : 원고 패소
 - 원고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태를 종합할 때, 원고는 한국에 밀접한 생활관

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원고는 일본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본 세법상 거주자로 불여지가 있음.
- 이처럼 원고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중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함.
- 한편 원고는 한국에는 그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을 최종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한국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 만약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일본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여부(즉, 한국-일본 조세조약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 또는 일본 중 어디에 있는지)

나. 판결 결과

-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1)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 ▣ 국내·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법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원고 가족의 생활관계, 원고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소득세 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2) 한국-일본 조세조약의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

-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함.
- 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먼저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를 최종거주지국으로 보되,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여기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음.
- 원고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였음.
- 따라서 원고는 한국 및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므로, 결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함.

(3) 한국-일본 조세조약의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소재지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어느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뜻함.
-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하였음.
-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데, 이는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음.
- 원고는 국내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으로 보아야 함.
- 이처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므로, 원고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국외원천소득(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어느 개인이 한국과 외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
-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함.